제6회 규제합리화위원회
성장분과위 회의록

2026. 6. 26.

국 무 조 정 실
규 제 조 정 실

Ⅰ. 회의개요

○ 일　시 : ’26. 6. 26. (금) 14:00 ~ 18:00

○ 출석위원(11명)

– 남궁범 분과위원장(주재)

– 민간위원 : 강영철, 김춘순, 류정모, 박민수, 박익수, 이세영, 이종원, 조원동, 최원석 위원

– 정부위원 : 국조실, 국토부

Ⅱ. 상정안건

구분	의안번호	상정기관	의 안 명	구 분
①	2026-170	방미통위	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	의결안건

Ⅲ. 회의 결과

1. (의결) 「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방미통위)

□ 개 요

소관 부처	방미통위
규제 사무명	1. 「정보통신망법」상 대규모서비스제공자의 범위
위원회 결정 내용	○ **재화·용역의 매개·알선 서비스**는 **불법·허위조작 정보의 주요 유통경로**로 **보기 어려우며**, 이미 **기존 규제에 의해 체계적으로 규율**되고 있으므로, **재화·용역의 매개·알선 서비스**는 **규제대상**에서 **제외**토록 **개선권고** ○ **검색서비스 제공자**가 **게재자 통지의무**를 **이행**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며, **게재자 통지의무 미이행 시 게재자 권익보장**이 **약화**되는 **부작용**이 **우려**되므로 **검색서비스**를 **규제대상**에서 **제외**토록 **개선권고** ○ **국내 서비스 제공자**에 대한 **역차별이 발생**하지 **않도록 규제 집행상황을 위원회**에 **보고**하고, 이에 대한 사후 검증을 위해 개정안에 대한 **사후규제 영향평가**를 **2028년 상반기에 시행**하도록 **부대권고** ○ **피규제자**의 **예측가능성 향상**과 **방미통위**의 **합리적 규제 운용**을 위해 **방미통위**가 **개정안 관련 해설서**를 **금년 8월말까지 작성·배포**하도록 **부대권고**

□ 논의 내용

(1)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

○ (이해관계자) 불법·허위조작정보 규제는 민주적 기본질서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, 불법·허위조작정보와 관련한 일련의 조치의무를 부담하는 대규모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 업역기준은 정치적 의사결정·선거·여론 형성 등과 직접 관련된 영역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음

- (이해관계자) 검색서비스는 이미 존재하는 게시물과 검색자를 연결하는 서비스이기에 검색서비스 제공자는 게시물에 대한 자체 처리권한이 없으며, 법률상 의무인 게재자에 대한 통지의무 이행 역시 어려우므로 규제대상에서 제외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며,

- (이해관계자) 재화·용역의 매개·알선 서비스 내 유통 정보는 대부분 개인 간 거래와 관련된 정보일 뿐만 아니라,「전자상거래법」등 기존법령의 규율로도 충분하므로 재화·용역의 매개·알선 서비스 또한 대규모서비스 제공자의 범위에서 제외해 주시기를 요청드림

○ (○○○ 위원) 검색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검색결과 원본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이해되는데, 이미 이용자에 대해서 맞춤검색·광고 등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?

- (이해관계자) 검색서비스 이용자에 대해서는 관련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나, 정보통신망법이 규제하고자 하는 것은 이용자가 아닌 검색결과에 표시되는 원본게시물의 게재자임

- (이해관계자) 검색서비스는 웹상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정보를 단순 크롤링 하여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므로, 검색서비스 제공자는 원본 게시물 게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원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함

○ (○○○ 위원) 원본게시물 및 게재자에 대한 조치를 하기 어렵다고 하셨는데, 문제되는 게시물 자체가 검색 결과에 등장하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 자체는 현재의 기술력으로 가능한 수준이 아닌지?

- (이해관계자)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해당 게시물이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등에는 검색결과 표출 제한 등의 조치는 가능한 상황임

○ (○○○ 위원) 방미통위는 「전자상거래법」 등에 근거한 기존 규제의 경우 개정안하고 목적·절차 등이 다르므로 재화·용역의 알선·매개 서비스는 규제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. 이에 대해서 어떤 의견인지?

- (이해관계자) 일부 특성이 다소 다르다고 중복규제가 아니라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함. 제공자가 동일한 콘텐츠에 대해 여러 법률을 통해 관리·감독을 하는 과정에서 규제 부담이 중첩적으로 발생할 것임

○ (○○○ 위원) 중복 규제라고 말씀은 하시지만, 추가적인 부담이 실질적으로는 적은 것은 아닌지?

- (이해관계자) 서비스 제공자들은 개정안에 따른 신고시스템을 별도로 새로이 만들고 있으며, 동일 게시물에 대해 여러 법률 판단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상황임

○ (○○○ 위원) 만약 중복규제의 문제가 있다면 「전자상거래법」을 소관하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하였을텐데,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의 문제제기는 없던 것으로 보임

○ (○○○ 위원) 만약 중복규제를 이유로 재화·용역의 매개·알선 서비스를 규제대상에서 제외한다면, 업계나 협회 차원에서 자율규제 형태로 별도 보완할 계획이 있는지?

- (이해관계자) 기존에도 자율규제 형태로 배달 플랫폼에 대해서 분쟁 조정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었으며, 이를 숙박 플랫폼으로 확장하는 상황임.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원사들과 더욱 신경 써 나가겠음

○ (○○○ 위원) 불법·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, 업계에서는 어느 정도의 투자를 하고 있는지?

- (이해관계자)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, 서비스 제공자들은 불법정보를 걸러내기 위해 24시간 365일 내내 모니터링과 기술적 조치 등을 충분히 지속하고 있는 상황임

- (이해관계자) 그러나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자들이 무엇이 허위인지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울 것임

○ (○○○ 위원) 그렇다면, 개정되는 「정보통신망법」에 따른 불법·허위조작정보 관련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업계에서는 불법·허위조작정보를 어떻게 파악하고 판단하려고 하시는지?

- (이해관계자) 악의적이고 명백한 가짜 뉴스, 법원의 판결과 배치되는 사실 등에 대해서는 대처가 가능하나, 허위 후기 등에 대해서 서비스 제공자가 이를 잡아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음

○ (○○○ 위원)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림. 여러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이용자 수를 산정하려고 할 때 각 서비스 간 이용자 수가 중복하여 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, 중복을 제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?

- (이해관계자) 서비스 제공자별로 상황이 다를 것 같기는 하나, 이용자 고유값 등을 바탕으로 이용자 수를 중복 없이 산정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지는 않을 것 같음

○ (○○○ 위원) 불법·허위조작정보에 대해 대규모서비스 제공자에게 신고하려는 자는 실명확인 절차를 별도로 진행하여야 하는지?

- (이해관계자) 실명확인이 별도 진행되지는 않으나, 신고 시 연락처·이름·신고내용 등은 기본적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음

○ (○○○위원) 업계는 재화·용역의 매개·알선 서비스 및 검색서비스를 규제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, 그렇게 생각하시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지?

- (이해관계자) 해당 서비스의 성격을 감안할 때 법이 요구하는 조치를 업계가 완벽하게 이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임

○ (○○○ 위원) 검색서비스 제공자는 게재자 통보의무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기에 검색서비스 전체를 규제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하였는데, 검색서비스는 규제대상으로 포함하되 게재자 통보의무만을 제외한다면 업계는 받아들일 수 있는지?

- (이해관계자) 단순히 게재자 통보의무만을 제외하는 경우, 게시물 게재자의 표현의 자유 등 권리 보장이 약화될 수 있음

○ (○○○ 위원) 개정안 시행에 따라 개별 대규모서비스 제공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어느정도 될 것이라고 추산하시는지?

- (이해관계자) 수억 단위로 예상하고 있으나, 비용 대부분은 인건비이므로 신고건수가 예측에서 벗어날수록 비용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음

○ (○○○ 위원) 지금 개정안에는 이용자 수 산정방법 등 해석이 불분명한 부분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. 방미통위가 실무적 세부지침 혹은 해설서를 제작하는 것에 이견이 있으신지?

- (이해관계자) 별도의 이견이 있지는 않음

(2) 부처 의견 청취

○ (부처) 기존에는 불법·허위조작정보를 직접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불충분하였던 상황

- (부처) 최근에도 불법·허위조작정보가 인터넷 공간에 계속하여 게시되는 등 사회적 문제가 지속하여 발생하고 있음

○ (○○○ 위원) 허위조작정보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직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점진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? 재화·용역의 매개·알선 서비스 내 후기나 검색서비스 내 검색결과 때문에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사례가 있는지?

- (부처) 재화·용역의 매개·알선 서비스의 경우, 캄보디아 구인광고글을 올려 납치를 시도한 사례가 있으며, 허위 이용자 후기와 관련하여 업주가 자살하는 사례 또한 있었음

- (부처) 검색서비스의 경우 불법·허위조작정보의 확산 통로로써 기능하는 등 그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하고 있음

○ (○○○ 위원)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으면서까지 일부 이슈를 원인으로 규제대상을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?

- (부처) 그런 우려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음. 다만 개정안을 통해서 대규모서비스 제공자에게 부과되는 의무는 자율규제 정책 수립·운영 및 신고받은 불법·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조치 등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이행이 가능한 사항들임

○ (○○○위원) EU의 Digital Service Act의 경우, 불법·허위조작정보에 해당되는 개념이 Disinformation인데, 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, 실수가 아닌 정치적 선동·경제적 교란을 위한 허위 사실 유포를 의미함. 이에 비해 우리나라 규제대상은 광범위한 것 같음

- (부처) EU에서도 소셜 미디어 내 허위조작정보가 광범위하게 유포되었다고 판단하면 조사할 수 있으며, 이미 해당 조사가 시행되고 있음

○ (○○○ 위원) 불법정보에 비해 허위조작정보는 판단비용이 매우 많이 들 뿐만 아니라, 판단주체별로 판단 자체도 다를 것이라고 보임. 결국에는 법원에 의해 최종 판단을 받아야 할 텐데, 이러한 과정에서 사회적 비용이 매우 커질 우려가 있는 것은 아닌지?

- (부처) 결국 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 맞음. 다만 허위조작정보와 손해간 인과관계가 있어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기존보다 많은 소송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므로 사회적 비용이 매우 커질 것이라고 단정하긴 어려움

○ (○○○ 위원) 2020년 무렵 불법촬영물 조치의무 대상 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대한 규제심사를 할 때, 재화·용역의 매개·알선 서비스를 포함하는 것은 과도하여 대상에서 제외하였음. 이번 개정안에서도 동일하게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?

- (부처) 그 당시에 재화·용역의 매개·알선서비스 내에서 불법촬영물이 유통되는 경우가 없던 것으로 알고 있음. 이와 달리 불법·허위조작정보는 재화·용역의 매개·알선서비스 내에서 활발히 유통되고 있음

- (부처) 나아가 불법촬영물 조치의무에는 스크리닝 등 기술적·관리적 조치가 포함되는데, 대규모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는 접수된 신고의 처리 및 이에 대한 통지 등에 한정되고 있어 규제강도 또한 다름

○ (○○○ 위원) 부처에서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발생하는 비용이 한정적이라고 주장하나, 서비스 제공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상황임. 법이 시행된 후 신고 접수 및 사후조치에 건수에 따라 규제비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함

- (부처) 서비스 제공자가 신고된 내용에 대해서 최소한의 검토를 하라는 취지이며, 신고가 남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자가 이를 반려 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 규제부담을 경감할 예정임

○ (○○○위원) 재화·용역의 매개·알선 서비스는 「전자상거래법」, 「표시광고법」 등 현행 규정으로도 불법·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한 자에 대해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등 체계가 확립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을 제외하는 것에 대해서 부처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?

- (부처) 물론 불법·허위조작정보 등에 관한 처벌 규정들이 있으나 이는 사후적 형사처벌 위주여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

- (부처) 서비스 제공자가 즉각 조치하지 않으면 불법·허위조작정보는 순식간에 확산될 위험성이 있음. 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서비스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됨

○ (○○○위원) 규제 수준이 과하다는 생각임. 규제가 필요하다면 기존의 규제를 먼저 충분히 활용하면 되는 것이므로,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한정하여 규제대상 확장을 신중히 할 필요가 있음

- (부처) 개정안은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어 매출액의 6%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EU의 Digital Service Act 등 타국의 입법 사례에 비해서 과도하다고 보기는 어려움

○ (○○○위원) EU의 Digital Service Act에는 검색서비스 게재자에 대해서는 통보의무가 제외되어 있는 것은 맞는지?

- (부처) 그렇게 파악하고 있음

○ (○○○ 위원) 개정안 위반 시 별도 처벌규정이 없다면, 대규모 서비스 제공자로 지정된 자가 개정안의 취지를 몰각시킬 정도로 의무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?

- (부처) 이행하지 않는다면 부처에서 권고 등을 할 수 있고, 자율규제를 절차대로 운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가 가능함

○ (○○○ 위원) 개정안은 국내 뿐만 아니라 외국의 서비스 제공자 또한 대상으로 하고 있음. 국내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법집행이 차별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부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?

- (부처) 외국의 서비스제공자에 대해서도 법상으로 조사 요청은 가능한 상황이고, 개정안의 사례는 아니지만 위치정보와 관련해서는 외국정부에 조사요청을 한 적이 있음

○ (○○○ 위원) 개정안을 읽어보면 불분명한 부분이 많음. 산정단위나 이용자 수 산정 시 중복 제외 여부가 개정안에 드러나지 않는 것 같음

- (부처) 기존「전기통신사업법」등에서 사업자·제공자 등은 법인 단위로 적용을 하고 있으므로 개정안 또한 법인이 기본 단위이며, 동일 제공자 내 이용자 수 산정 시 중복은 제외할 예정임

(3) 위원회 논의

○ (○○○ 위원) 대규모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 업역기준에 재화·용역의 매개 서비스를 포함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전반적으로 일치하시는 것 같음

○ (○○○ 위원) 검색서비스 제공자는 게재자 식별정보 등을 미보유하여 법률상 의무사항인 게재자 통보의무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검색서비스 또한 서비스 업역기준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

○ (○○○ 위원) 규제의 역차별 우려가 있으므로 규제 집행상황에 대해 부처가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야하며, 이를 정확하게 분석·검증하기 위해 사후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

○ (○○○ 위원) 사후영향평가에 대해 명확한 기간설정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. 2028년 상반기 정도라면 충분할 것으로 보임

○ (○○○ 위원) 개정안에 따른 용어의 해석에 대해 혼선이 있을 수 있으므로, 이와 관련한 통일적인 법집행 및 피규제자 예측가능성 향상을 위해 해설서가 마련될 필요성이 있어 보임

○ (○○○ 위원) 해설서가 조속히 마련될 필요성이 있음. 적어도 금년 8월말까지 방미통위가 이를 작성·배포하도록 하여야 함

□ 심의 결과 : 개선권고 · 부대권고

○ **재화·용역의 매개·알선 서비스**는 **불법·허위조작정보의 주요 유통경로**로 **보기 어려우며**, 이미 **기존 규제에 의해 체계적으로 규율**되고 있으므로, **재화·용역의 매개·알선 서비스**를 **규제대상**에서 **제외**토록 개선권고

○ **검색서비스 제공자**가 **게재자 통지의무**를 **이행**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며, **게재자 통지의무 미이행 시 게재자 권익보장**이 **약화**되는 **부작용**이 **우려**되므로 **검색서비스를 규제대상**에서 **제외**토록 개선권고

○ **국내 서비스 제공자**에 대한 **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 집행 상황을 위원회**에 **보고**하고, 이에 대한 사후 검증을 위해 개정안에 대한 **사후규제영향평가**를 **2028년 상반기에 시행**하도록 부대권고

○ **피규제자**의 **예측가능성 향상**과 **방미통위**의 **합리적 규제 운용**을 위해 **방미통위**가 **개정안 관련 해설서**를 **금년 8월말까지 작성·배포**하도록 부대권고